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김 청 원



목 차

- 1. 전자파 기능**
- 2. 적합성평가 제도 개요**
- 3. 적합성평가 유형(적합인증, 적합등록 등)**
- 4.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및 표시 등**
- 5. 적합성평가 면제, 취소 및 사후관리**
- 6.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적합성평가 제도 개요

○ 적합성평가의 개요

- 제조사 등이 제품 판매 전 적합성평가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시험, 등록·인증하는 제도



<무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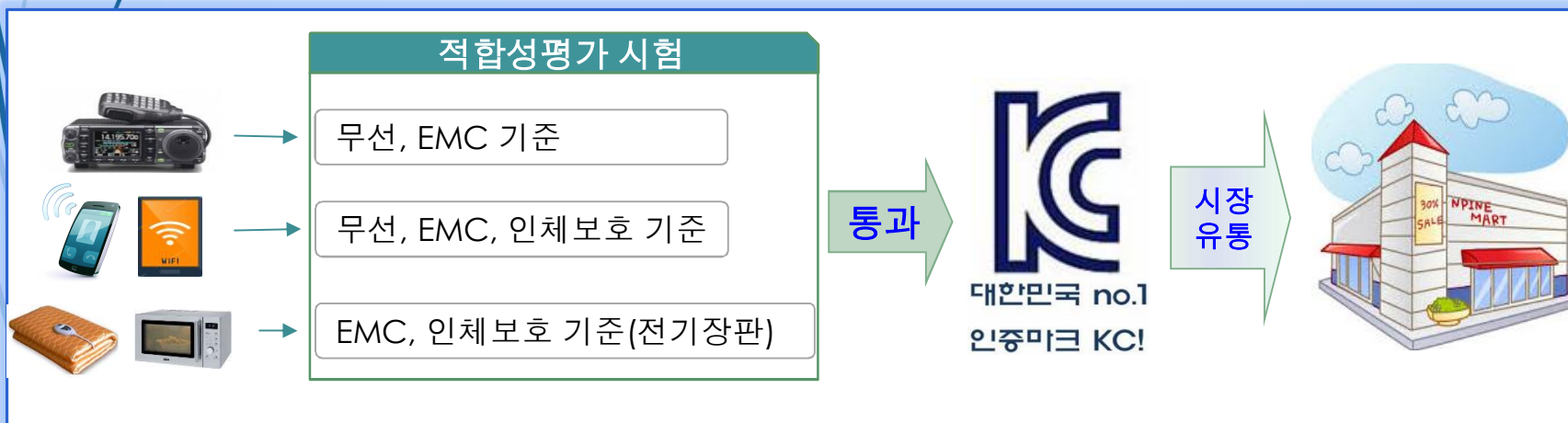
<전화기>



<노트북>



<냉장고>



○ 관계 법령

전파법

▶ 제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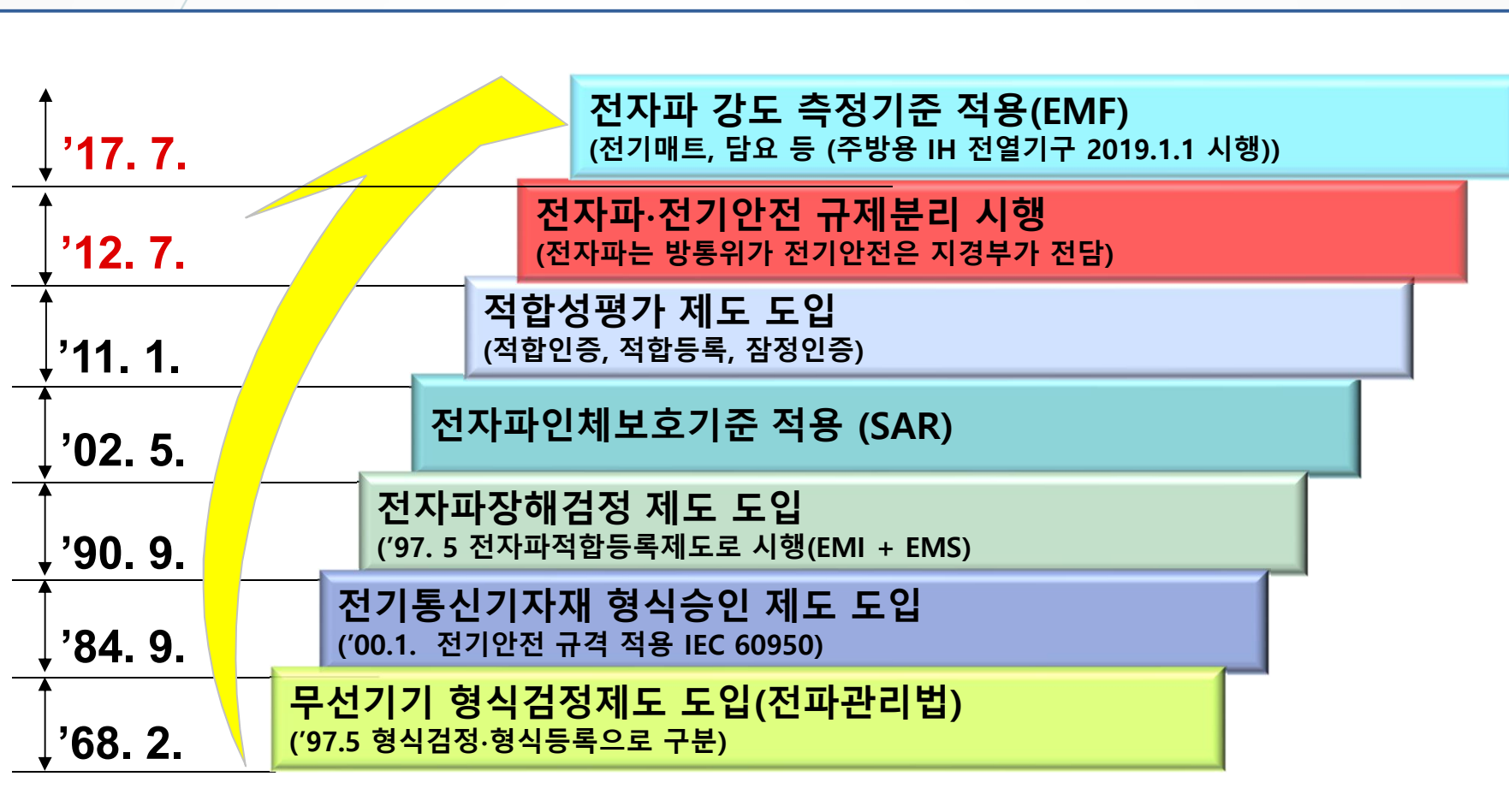
여기서 잠깐!

적합성평가 관련 전파법규 세부 규정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58조의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제58조의10(복제, 개조, 변조 등의 금지)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제58조의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제69조(수수료)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제84조~제86조(벌칙) 제88조(양벌규정) 제8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3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제77조의2(적합인증) 제77조의3(적합등록)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제77조의6(잠정인증)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77조의10(전문심사기구 등)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77조의13(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제77조의14(표시방법 등) 제97조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제97조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제117조의3(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19조(시정지시 등) 제123조(권한의 위임, 위탁) 제1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장(총칙) ✓ 제1조에서 제4조 제2장(적합인증) ✓ 제5조에서 제7조 제3장(적합등록) ✓ 제8조에서 제10조 제4장(잠정인증) ✓ 제11조에서 제14조 제5장(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 등) ✓ 제15조에서 제17조 제6장(적합성평가의 면제 등) ✓ 제18조에서 제20조 제7장(조사 및 조치) ✓ 제21조에서 제22조 제8장(보칙) ✓ 제23조에서 제2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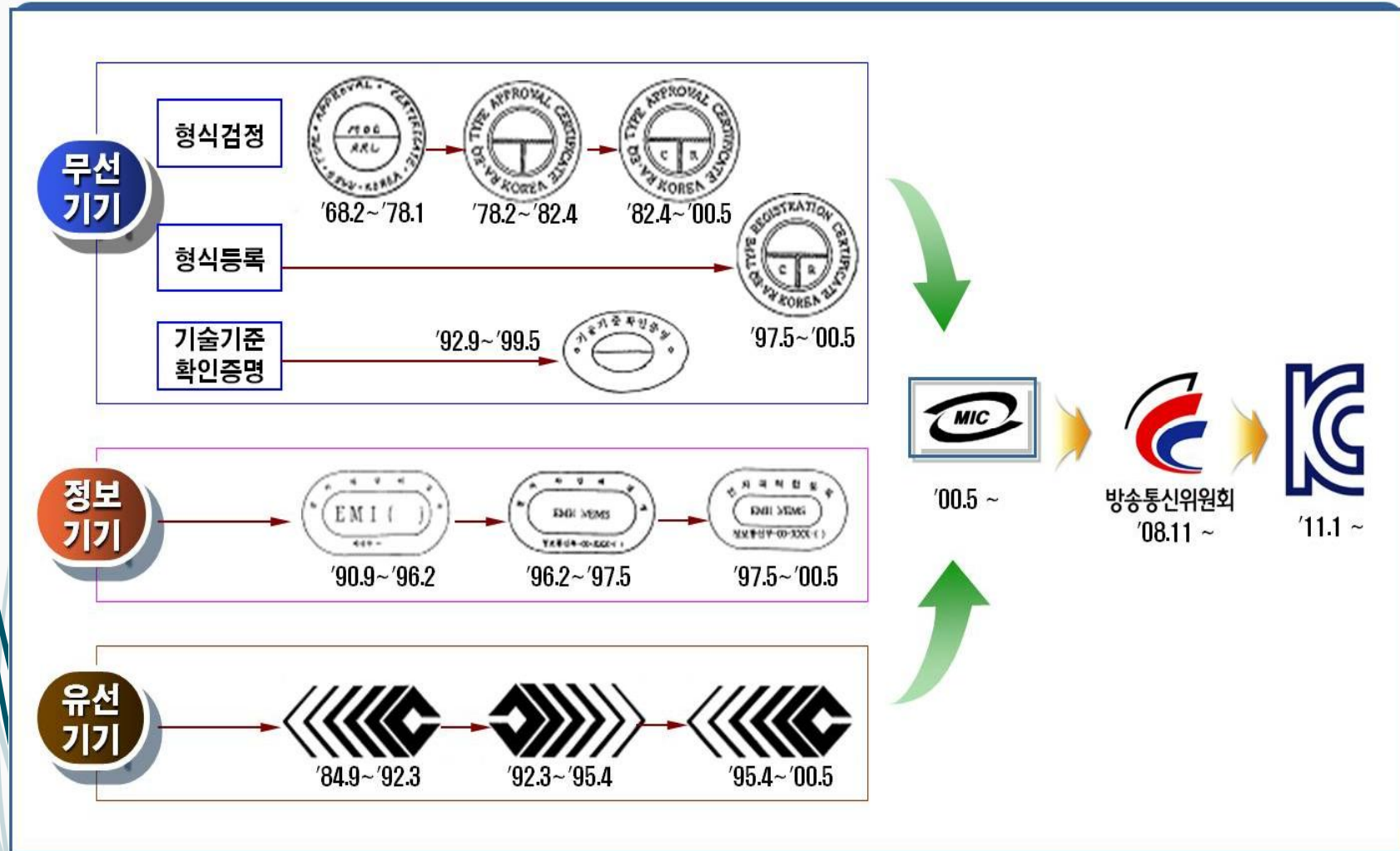
○ 주요 연혁

- '11.1월 유선·무선기기, 정보기기별 인증제도를 재의 적합성평가 체계 (적합인증, 적합등록)로 개편 <전파법 개정>



여기서 잠깐!

적합성평가 표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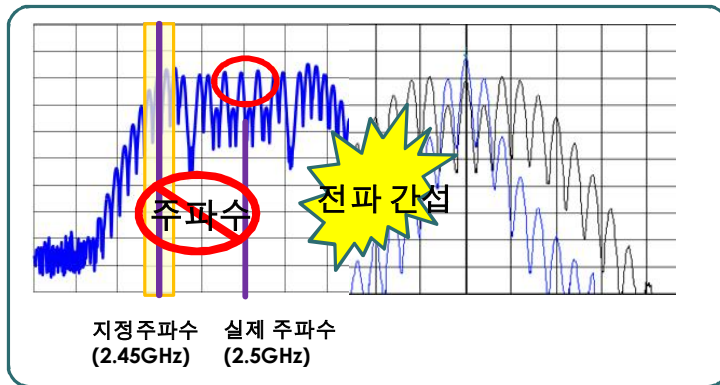


○ 적합성평가 기준

● 유선 · 무선 · EMC · 전자파인체보호 기준에 따라 시험

○ 혼 · 간섭 없는 전파 이용

무선(RF) 기술기준



○ 전자파 영향이 없는 환경 조성

전자파적합성(EMC) 기준, 인체보호 기준



여기서 잠깐!

적합성평가 세부 기준

구분	적합성평가기준	관련 법령	관련 세부기준
공통기준	· 전자파적합성	· 전파법 제47조의3 제1항	·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별기준	· 무선 기술기준	· 전파법 제37조, 제45조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간이무선국등그밖의무선설비의기술기준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했을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방송 기술기준	· 방송법 제79조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 유선 기술기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 · 68조 제69조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4조의2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단말장치 기술기준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 통신 설비에 관한 기기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 전자파인체보호	· 전파법 제47조의2	· 전자파인체보호기준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적합성평가 유형 (적합인증, 적합등록 등)

○ 적합성평가의 유형

전자파 영향정도(전파 혼·간섭, 기기 및 인체영향)를 고려해 유형 분류

적합인증

전파 혼·간섭, 전자파 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 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

※ (예시) 이동전화단말기, 블루투스 기기, 무선모뎀, 교환기 등

지정시험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보다 위해가 낮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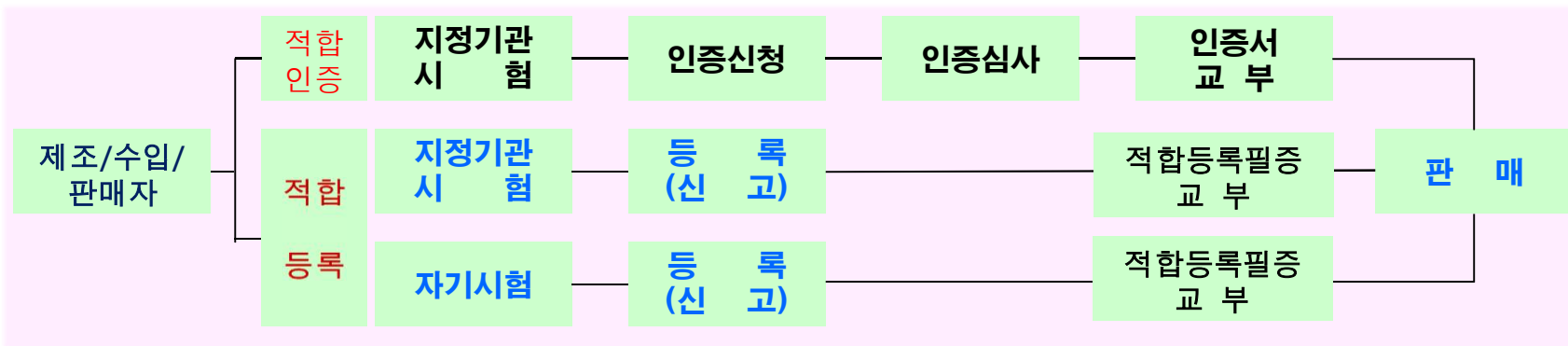
※ (예시) 컴퓨터, 프린터 등 정보기기, 냉장고 등 가전기기

자기시험 적합등록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

※ (예시) 산업용컴퓨터, 시험측정용 계측기, 공중전화기 등

○ 적합성평가 처리 절차



적합인증

- 시험성적서
- 사용자설명서
- 외관도
- 회로도(미제출시 2년 시험)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적합등록 (지정/자기)

- 부합증명확인서
- 대리인지정서

자체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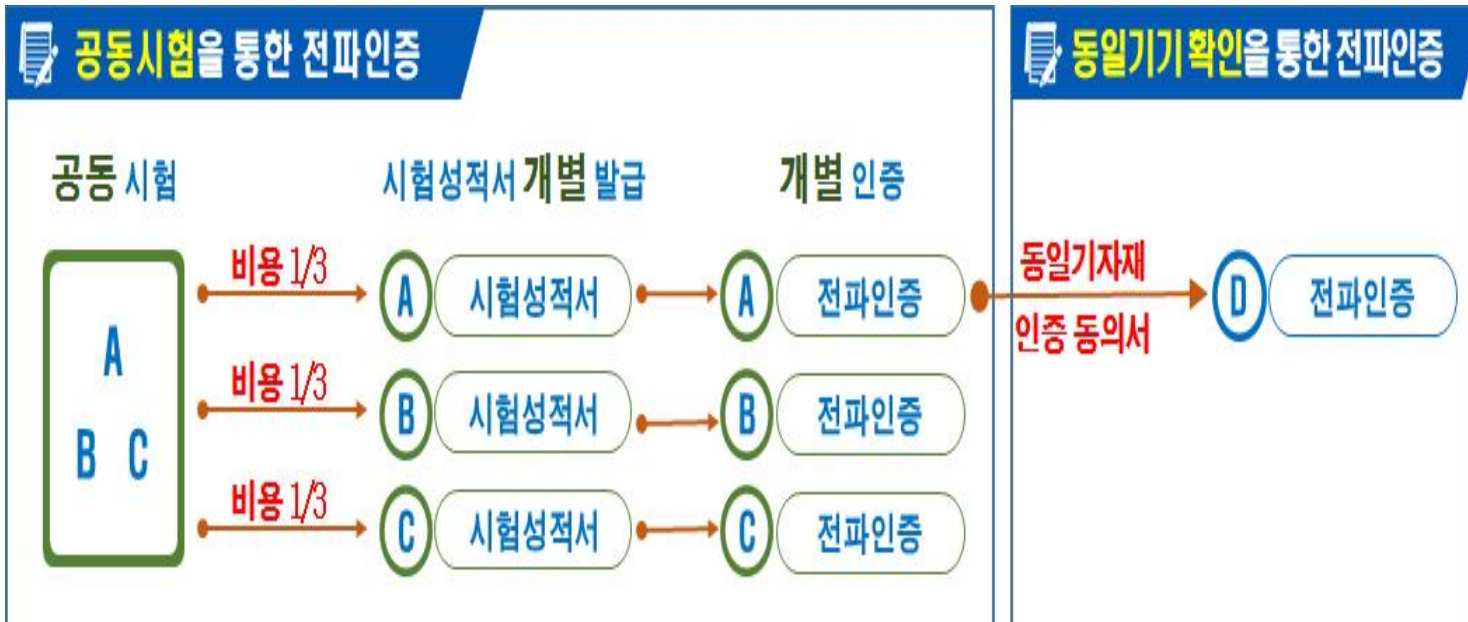
- 시험성적서
- 사용자설명서
- 외관도
- 회로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여기서 잠깐!

공동 시험 허용 등 ('18.7.31)

□ 주요 내용

- ✓ 동일한 수입기자재의 경우 다수사업자가 하나의 신청서로 접수하여 공동으로 시험을 받도록 하고 시험성적서는 각각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험절차를 개선
- ✓ 적합성평가를 받은 수입 동일기기는 추가 시험 없이 선인증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적합인증 [1/2]

□ 관련 법령

- ✓ 법 제58조의2 제2항, 영 제 77조의2, 고시 제5조~제7조

□ 대상기자재 분류기준

-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에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 구비서류

- ✓ ① 사용자설명서(한글본), ② 시험성적서, ③ 외관도, ④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⑤ 회로도, ⑥ 대리인지정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

□ 처리기간 : 5일 이내

대부분의 유·무선 통신기자재가 해당하며, 정부가 적합성여부 심사

○ 적합인증 [2/2]

□ 적합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 ✓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
- ✓ 적합성평가 받는 개인,법인의 식별부호 신청 : 별지 제2호서식(최초 적합성평가 신청자에 한함)
- ☞ 기구적·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의 선택적 사용 목록 및 동일성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변경신고 생략 가능
- ☞ 적합인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 등록 가능
- ☞ 회로도 미제출할 수 있는 경우 : 병행수입자, 수입자가 회로도 확보·제출이 어렵다고 인정
 - 준수사항 : 매2년마다 시험성적서 제출(무선기준시험, EMI시험, 구성품 등 변경여부 확인내역)

□ 적합인증 심사 및 관보 공고

- ✓ 신청·첨부서류의 적절성과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의 적절성,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등 심사
- ✓ 시험성적서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확인 필요시 해당 기자재의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유효성 확인가능
- ✓ 적합인증 받은 기자재의 관보 공고
 - 상호 또는 성명, 기자재 명칭·모델명, 인증번호, 제조자 및 제조국가, 인증연월일

○ 적합등록 [1/2]

☐ 관련법령

- ✓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및 제4항, 영 제77조의3, 고시 제8조~제10조

☐ 대상기자재 분류기준

-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와 자기시험등록 대상이 아닌 기자재
- ✓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 측정·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 구비서류

- ✓ ①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② 대리인지정서(대리인 지정한 경우)

☐ 처리기간 : 즉시 처리

○ 적합등록 [2/2]

□ 적합등록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① 사용자설명서(영문가능), ② 시험성적서, ③ 외관도, ④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⑤ 대리인지정서, ⑥ 적합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⑦ 기타 변경신청 서류 등
- ⑧ 회로도(EMC 기준 적용 기자재만 생략 가능)
 -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생략 가능
 - 적합등록 기자재 중 단말기기류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 비치

□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복합기자재의 처리방법

- ✓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이 복합된 기자재는 기본적으로 적합인증절차 준용
- ✓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 또는 장착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적합등록 절차 준용 가능

□ 구성품 확인제도

- ✓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 받아 별도의 시험 없이 적합등록 신청 가능
- ✓ 관련서식 : 별지 제15호서식(적합등록 기자재의 구성품 확인서)

○ 잠정인증

□ 관련 법령

- ✓ 법 제58조의2 제7항, 영 제77조의5, 고시 제11조~제14조

□ 잠정인증 신청 조건

- ✓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 국 내·외 표준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인증을 허용하고, 향후 기술기준이 제정된 후 정식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합성평가기준 제정 인지 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정식인증을 받아야 함)

□ 잠정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 ✓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
- ✓ 첨부서류 : ① 기술설명서(한글본), ②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③ 사용자설명서, ④ 외관도,
⑤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⑥ 회로도, ⑦ 대리인지정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
- ✓ 처리기간 : 60일(필요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여기서 잠깐!!

전자민원 시스템

□ 전자민원 신청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를 활용
(<http://www.emsit.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적합성평가의 변경 및 표시 등

○ 적합성평가의 변경 (1/3)

□ 관련 법령

- ✓ 법 제58조의2 제5항, 영 제77조의4, 고시 제15조~제17조

□ 변경신고

- ✓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와 변경사실 증명서류 제출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
✓ 적합인증 ➢ 시험성적서, 외관도, 회로도, 부품배치도, 변경 전·후 사진 ✓ 적합등록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파생모델명 변경, 제조자제조국가 변경하는 경우 ➢ 변경신고서와 인증서 제출 ✓ 상호, 성명,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상속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명서류와 인증서 제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의 제출 생략

○ 적합성평가의 변경 (2/3)

□ 변경사항의 범위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
✓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의 경우 ✓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내부에 장착된 구성품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형식 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의 제거는 변경사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TV 등과 같이 일반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제외	✓ 파생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 ✓ 제조자 또는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 상호,성명,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상속 또는 법인(법인내 사업부서 포함)을 양도, 합병, 분할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법인(개인사업자가법인의대표자와 동일한경우)으로 전환하는 경우 ➢ 기타상호명,성명,주소를단순 변경하는 경우 ✓ 하드웨어 변경 없이 S/W를 이용하여 사용중인 기능 차단 또는 삭제의 경우

○ 적합성평가의 변경 (3/3)

□ 변경사항의 범위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변경
✓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 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 EMC 기준만 적용 기자재의 단순변경 ✓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체하는 경우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음) ✓ 다이오드를 대체하는 경우 ✓ 전기적 회로 동일, 전력용량(Wattage) 축소 경우 ✓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한 경우

□ 변경신고의 생략

- ✓ 적합성평가신청시 기구적·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부품 목록과 전기적 특성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전기적인 회로는 동일하고 단순 저장용량만이 변경된 기자재

○ 적합성평가의 표시 (1/2)

☐ 관련 법령

- ✓ 법 제58조의2 제6항, 영 제77조의5, 고시 제23조

☐ 국가통합마크인 KC마크 사용

- ✓ 제품과 포장에 모두 표시(KC마크와 식별부호)
- ✓ 적합성평가정보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명서에 표시 가능

☐ 적합성평가표시 시점

- ✓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출고 전에 하고, 수입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세관 통관 전에 하여야 함

☐ 적합성평가 표시

[기본도안]



[표시방법]



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 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 가능

여기서 잠깐!!

수입 기자재의 통관 확인

☐ 관련법령

- ✓ 관세법 제226조, 고시 제2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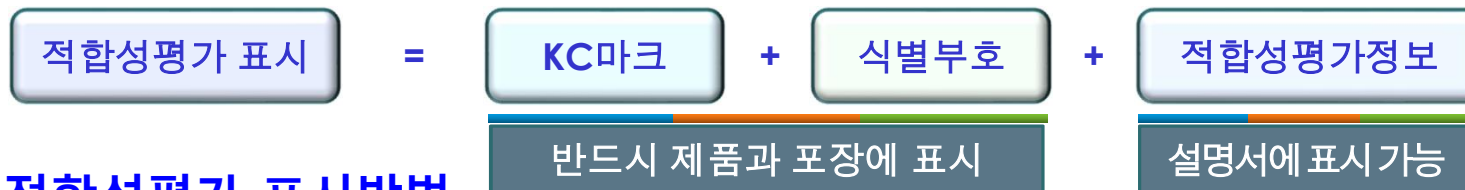
☐ 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 ✓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 이용 : 인터넷 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
- ✓ 통관확인 방법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확인 신청(확인)서 교부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전통관 확인 신청(확인)서 교부

사전통관신청기자재는 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함

○ 적합성평가의 표시 [2/2]

□ 적합성평가 표시



□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 ✓ KC마크의 색채는 남색을 원칙으로 하나, 제품의 바탕색과 식별이 용이한 **모든 색채 사용 가능**
- ✓ 적합성평가정보(상호명, 기자재명칭,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 제조국가)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또는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설명서**에 표시 가능
- ✓ 판매·대여 목적의 인터넷 게시제품의 경우에도 적합성평가표시 필요(해당제품 게시된 페이지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 식별부호는 문자형태로 표시)
- ✓ 소형의 제품(단면적 400mm² 이하)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포장에만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KC마크, 식별부호 중 선택표시 가능
- ✓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는 포장에만 표시 가능
- ✓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 및 홍보 시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 KC 마크와 모델명만을 기재할 수 있다**(단, 사용자 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 정보 기재)

○ 적합성평가의 표시 (舊 표시)

□ 식별부호 표시방법

R	-	C	R	M	-	A	B	C	-	X	X	X	X	X	X	X	X	X	X	X	X	X	X
①		②	③	④		⑤				⑥													
전파법 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 청 자 정보식별				제품식별													

- ✓ ①란은 전파법을 나타내는 식별부호 “R(Radio Act)” 기재
- ✓ ②란은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 기재
 - 적합인증 : C(Certification), 적합등록 : R(Rigistration), 잠정인증 : I(Interim)
- ✓ ③란은 기본 인증정보로서 “시험분야 식별부호” 기재
 - 무선분야 : R(Radio), 유선분야 : T(Telecommunication), 전자파분야 : E(Eletromagnetic Wave), 유선, 무선, 전자파 분야 복합기능 : M(Multi Function)
- ✓ ④란은 기본 인증정보로서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 기재
 - 제조자 : M(Manufacturer), 수입자 : I(Importer), 판매자 : S(Seller)
- ✓ ⑤란은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 기재
- ✓ ⑥란은 신청자의 “제품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혼용 가능)” 기재 : 14자리 이내에서 정함

○ 적합성평가의 표시 [新표시]

□ 식별부호 표시방법

R	-	C	S	-	A	B	C	-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①		②	③		④			⑤															
전파법 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 청 자 정보식별			제품식별															

- ✓ ①란은 전파법을 나타내는 식별부호 “R(Radio Act)” 기재
 - 2019.6.30일까지 기존 MSIP와 병행사용 가능
- ✓ ②란은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 기재
 - 적합인증 : C(Certification), 적합등록 : R(Rigistration), 잠정인증 : I(Interim)
- ✓ ③란은 기본 인증정보로서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기재
- ✓ ④ 란은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 기재
- ✓ ⑤란은 신청자의 “제품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혼용 가능)” 기재 : 14자리 이내에서 정함

면제, 취소 및 사후관리

○ 적합성평가 면제 (1/4)

● 전부면제 : 적합인증, 적합등록 면제

- ✓ 시험 · 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 하는 경우
- ✓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 일부면제 : 시험면제

- ✓ 잠정인증을 받을 당시와 기술기준이 제정되어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의 적합성평가기준이 동일한 경우

● 일부면제 : 적합등록(전자파적합성분야 : EMC)

- ✓ 타 법령에 의거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한 경우

(전파법 EMC 기준대비 동일 이상인 기자재)

-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인증품목, 「자동차관리법」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의료기기법」

○ 적합성평가 면제 (2/4)

□ 전부면제(법령) : 모든 시험과 인증을 모두 면제

- ✓ **시험 · 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기자재
- ✓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 제한없음
 - 외국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적합성평가 면제 (3/4)

□ 전부면제(고시) : 모든 시험과 인증을 모두 면제

- ✓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 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 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 종류의 기자재
-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
- ✓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 2 제6호 다목)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절차

- ✓ 신청방법 :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와 관련서류 첨부
- ✓ 첨부서류
 -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 수입물품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 등

□ 적합성평가 면제 처리기간 : 1일 이내

○ 적합성평가 면제 (4/4)

□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서 발급

- ✓ 적합성평가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서 발급 : 별지 제12호서식
- ✓ 면제 확인사항
 - 면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면제신청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면제신청 기자재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생략

-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 ✓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 ✓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
- ✓ 타 법령에 의거,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한 경우 (전자파법 EMC기준 동등이상)

여기서 잠깐!!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

- 디지털장치류(9kHz 이상 타이밍신호 또는 펄스발생회로 내장되어 디지털 신호로 동작, 정보기기 이외)
 -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인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 단순 시계 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 ✓ 능동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 ✓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리모콘 등)
 - ✓ 카메라 렌즈
 - ✓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배터리 포함)
 - ✓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
-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
 - ✓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 형광등 등 조명기기류(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
 - ✓ 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만 있는 LED 랜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구류, 디지털장치류(모터사용 제외, USB·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
 - ✓ 일시적(2분미만) 빛과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 장난감)

○ 적합성평가 취소

● 적합성평가의 취소

✓ 관련 법령

- 법 제58조의4, 영 제77조의7

✓ 개선명령(적합성평가의 취소,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 수입, 판매, 사용 중지)

-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적합등록자가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적합성평가의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적합성평가의 취소를 받은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음

○ 행정처분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영 제118조제1호 관련, 별표23)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58조의4 제1항제1호	시정명령 및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1개월)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2개월)	취소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58조의4 제1항제2호	시정명령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1개월)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2개월)
적합성평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58조의4 제1항제2호	취소	-	-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2개월)	취소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 제1항제4호	시정명령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2개월)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4개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법 제58조의4 제2항제1호	취소	-	-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 제2항제2호	취소	-	-

과태료 부과기준

□ 적합성평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영 제124조제1항 관련, 별표28)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후 관련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제5호의2	100	200	300
법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4호	50	70	100
법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대여한 자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	법 제90조제5호의3	100	200	300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5호	50	70	100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90조제5호의4	100	200	300
법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법 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90조제5호의5	100	200	300

벌칙

● 전파법 제84조(벌칙)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 전파법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개조·변조한 자

● 전파법 제86조(벌칙)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파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전파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전파법 제58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복제 또는 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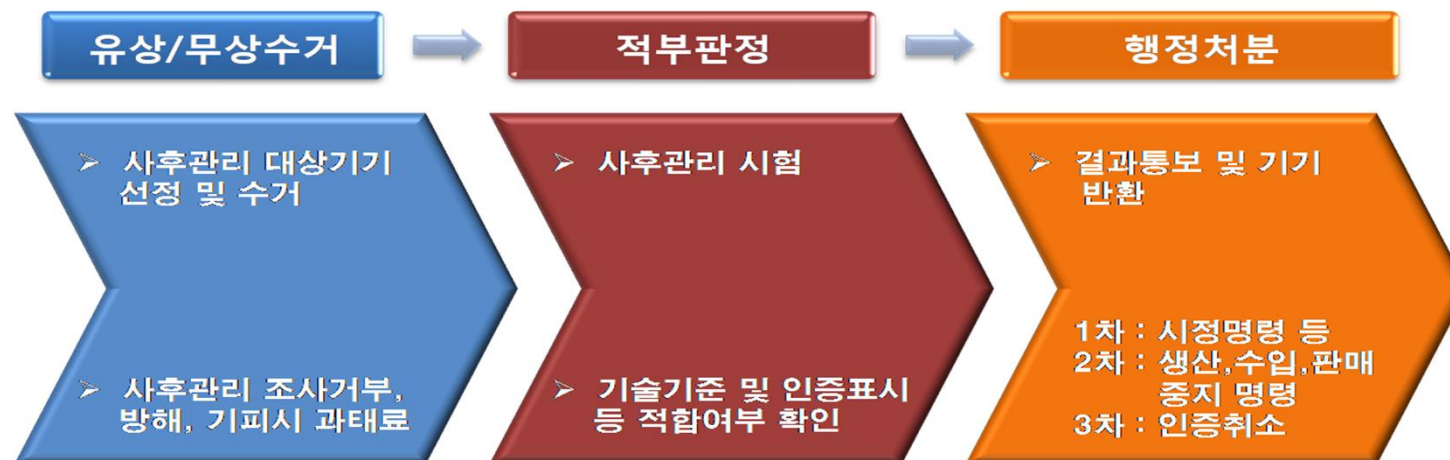
● 사후관리

✓ 관련 법령

➢ 법 제71조의2, 영 제77조의7

- ✓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표시 및 적합성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유통·판매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 및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하는 일체행위

● 사후관리 절차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19.7.24)

○ 대상기자재 재배열 [적합성평가 기준에 따라]

현 행

- ▶ 적합인증 (별표 1)
-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별표 2)
- ▶ 자기시험 적합등록 (별표 3)



개 선

- ▶ 적합성평가대상기자재 (별표1)로 통합,
기술기준별로 재배열 및 규제수준 표시
 - * 무선 기술기준 [6종]
 - * 유선 기술기준 [4종]
 - * 전자파적합성 기준 [1종]

○ 대상기자재 재배열 [적합성평가 기준에 따라]

1. 적합인증

현 행 (164종)		개 정 (177종)	비고 (13종 ↑)
적합인증 (164종)	무선기자재 (121종)	[140종] 1. 해상업무용 (35종) 2. 항공업무용 (2종) 3. 간이무선국 .. 등 그 밖의 업무용 (21종) 4. 사업자용 (43종) 5. 비신고용 (36종) 6. 기타 (3종)	<u>19종 ↑</u> ○ 간이 9조·15조·16조(1종) → (3종) 2종 ○ 기상원조용 (1종) → (2종) 1종 ○ 협대역 IoT (5종) 5종 ○ 사업자용 TRS, 무선폭출 (4종) 4종 ○ 소출력(ITS) (1종) 1종 ○ RFID/USN(2종) → (6종) 4종 ○ 용도미지정(1종) → (5종) 4종 ○ 무선CATV(2종) → (0) -2종
	유선기자재 (43종)	[37종] 7. 단말장치 (24종) 8. 종합유선방송 (6종)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1종) 10. 방송 공동수신설비 (6종)	<u>6종 ↓</u> ○ 단말기기류(5종) → (3) - 무선모뎀 (-1), 기타 단말기기류(-1) -2종 ○ 방송공동수신 (10종) → (6종) -4종

○ 대상기자재 재배열 [적합성평가 기준에 따라]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현 행 (321종)		개 정 (156종)	비고 (165종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321종)	EMC 기자재 (295종)	[129종] 11. 가. ISM 고주파이용기기류 (4종) 11. 나. 자동차 기기류 (2종) 11. 다.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53) 11. 라. 조명기기류 (4종) 11. 마. 전기철도류 (-) 11. 바. 전력선통신 (1종) 11. 사. 무정전전원장치 (1종) 11. 아. 저압개폐장치 (-) 11. 자. 멀티미디어 (39종) 11. 차. 승강기 (4종) 11. 카. 소방용품 (18종) 11. 타. 전기자전거류 (1종) 11. 파. 전원공급장치 등 (1종) 11. 거. 산업환경 (1종)	166종 ↓ ○ - ○ (3→2)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 - 1종 ○ 유지 통합(182 → 53) - 129종 ○ 유지 통합(15 → 4) - 11종 ○ - ○ - ○ - ○ - ○ 유지 통합(64 → 39종) - 25종 ○ - ○ - ○ - ○ - ○ -
	무선기자재 (1종)	5. 비신고용 - 미약전계강도기기 (1종)	○ -
	유선기자재 (25종)	7. 단말장치 (26종)	○ IP 기반의 영상정보기기 1종

○ 대상기자재 재배열 [적합성평가 기준에 따라]

3. 자기시험 적합등록

현 행 (78종)		개 정 (51종)	비고 (-27종 ↓)
자기시험 적합등록 (78종)	EMC 기자재 (63종)	[36종] 11. 나. 자동차류-전자식운행기록계(1종) 11. 다.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21종) 11. 마. 전기철도류 (1종) 11. 아. 저압개폐장치 (4종) 11. 자. 멀티미디어 (2종) 11. 하. 기타 기기류 (5종) 11. 너. 특수조건 (1종) 11. 더. 건전지 전원 등 (1종)	<u>27종 ↓</u> ○ - ○ 유지 통합(36 → 21) - 15종 ○ - ○ 유지 통합(8 → 4) - 4종 ○ - ○ 유지 통합(12 → 5) - 7종 ○ 유지 통합(2 → 1) - 1종 ○ -
	유선기자재 (15종)	7. 단말장치 (7종) 10. 방송공동수신설비 (8종)	

○ 일부 대상기자재 유형 재분류

현 행

▶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 164종

* 무선기자재 : 121종

* 유선기자재 : 43종



개 선

▶ 적합인증기자재 중에서 41종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

* 무선기자재 : 23종 완화

* 유선기자재 : 18종 완화

○ 일부 대상기자재 유형 재분류

1. 적합인증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무선기자재)

	대상기자재	세부기기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 기자재 (비신고 무선기기) [23종]	다.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1종)	
	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4종)	○ 음성 및 적용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 ○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단, SAR 적용기기 제외) ○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단, SAR 적용기기 제외)
	마. RFID용 무선기기 (2종)	○ 433MHz, 13.56MHz 대역 2종
	바. USN용 무선기기 (3종)	○ 920MHz 대역, 940MHz 대역, 1.7GHz 대역 3종
	아. UWB 기술 사용기기 (1종)	
	자.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5종)	○ 260MHz, 23GHz, 60GHz, 122GHz, 245GHz 대역 5종
	카.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3종)	○ 5.8GHz, 10GHz, 24GHz 대역 3종
	타. TVWS 데이터통신용 기기(2종)	○ 고정형, 이동형 기기 2종
	파. 레벨측정레이다용 기기(2종)	○ 차폐된 구조물, 76~81GHz 대역 2종

○ 일부 대상기자재 유형 재분류

2. 적합인증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유선기자재)

대상 기자재 (18종)		세부 기기
7. 단말장치 기기 (7종)	가. 시스템류 (6종)	○ ATM 교환기, 키폰시스템, 키폰과 구내교환기 혼합시스템, 자동음성처리 시스템, 전자사서함시스템, DID 기능의 멀티미디어 서버
	다. 단말기기류 (1종)	○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8. 유선방송국 설비 기기 (5종)	가.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 장치류 기기 (5종)	○ 진폭변조기, 주파수변조기, 디지털변조기, 텔레비전 신호처리기, 기타 관련 기기류
1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기기 (6종)	가. 증폭기 나. 레벨조정기 다. 광 송신기 및 수신기 라. 광 증폭기 마. 신호처리기 하. 기타 방송공동수신설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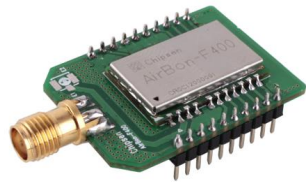
○ 일부 대상기자재 유형 재분류

3. 지정시험 적합등록 →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2종)		비 고
11. 나.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1) 자동차 기기류 (1종)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EMC시험하여 자기인증한 경우 면제 *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 삭제 * 자동차관리법에서 구분한 이륜자동차 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기기는 대상 제외
11. 라. 조명기기류	4) 기타 조명기구 (1종) (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 휴대전등, 조광기)	○ 조광기, 충전지만 사용 휴대전등은 이미 자기시험임

○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 간소화 대상 확대

< 현행 >



무선모듈 인증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사용한 완제품

- 무선모듈 인증 당시 시험 생략
- 무선모듈 인증 당시 관련 서류 생략

< 확대 >



완구용 모터 인증



인증 받은 완구용 모터를 사용한 완구
(별도의 능동회로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 인증



인증 받은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복합기

- ‘완구용 모터’,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 인증 당시 시험 생략
- 구성품 인증 당시 관련 서류 생략

○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완화 및 대상기자재 명확화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완화

현 행

- ▶ 수입제품은 세관 통관 전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
(단, 병행수입제품은 예외)



개 선

- ▶ 모든 수입제품이 세관 통관 전 제품 표면에 부착할 적합성평가 표시 스티커 등을 제공할 경우에 통관 가능

대상기자재 명확화 (무선, 유선)

-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무선설비의 기기를 LTE에서 분리하여 추가
- 전자파흡수율(SAR)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 명확화
-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중 10mW/MHz 이하 기자재를 특정소출력기기로 명확화
- 무선 CATV용 무선기기 삭제(주파수분배, 지정에서 삭제, 기준 없으며 사실상 인증 없음)
-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분리하여 추가
- 방송공동수신설비 중 주파수변환기 및 신호변환기 등 5종을 신호처리기로 통합하여 명확화

○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완화 및 대상기자재 명확화

대상기자재 명확화 (EMC)

- 산업·과학·의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에 **전기용접기류**를 이동
-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 내연기관 이륜 자동차 대상 **제외** 및 불꽃점화 엔진 구동기기류 **삭제**
 - 전자식 운행기록계를 이동
-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가정용**의 문구를 **삭제**
 - 각 대상기자재의 정격입력 등으로 인한 지정시험기관 및 자기시험 등록 구분을 명확화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류, 정보·사무 기기류를 **멀티미디어 기기류로 통합**
- 산업용(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 공정 및 빌딩제어 등에 사용하는 기자재)의 명확화
 - ISM,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무정전전원장치,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멀티미디어 기기류, 전원공급장치의 기자재로 한정
- 과학용 기자재의 명확화
 - 전기기가·전동기기, 조명기기, 멀티미디어 기기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대상 **제외**

감사합니다

Q&A

